

# 순천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규정

제정 1986. 9. 26  
개정 1992. 8. 10  
개정 1999. 5. 19  
개정 2000. 8. 23  
개정 2013.10. 02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순천대학교공업기술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연구소는 공업기술의 제반문제를 학문적으로 연구·해결함으로써 산학협동체제를 정착시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(개정 1999. 5. 19)

1. 공업기술의 연구개발
2. 공업기술의 교육, 지도 및 자문
3.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외부기관의 수탁용역 연구
4. 공업기술에 관한 연구발표 및 강습회
5. 논문집 발간 및 학술자료 편찬
6. 기타 이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3조(조직) ①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부를 둔다.(개정 1999. 5. 19)

1. 제1연구부 : 토목·건축·환경공학분야
2. 제2연구부 : 기계·우주항공공학분야(개정2013.10.02.)
3. 제3연구부 : 전기제어·전자·정보통신·컴퓨터공학, 멀티미디어공학분야(개정2000.8.23.)(개정2013.10.02.)
4. 제4연구부 : 신소재·고분자·화학공학분야(개정2013.10.02.)

② 소장은 공과대학의 부교수 이상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,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(개정 1999. 5. 19)

③ 각 연구부 부장은 소속 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(개정 2000. 8. 23)(개정2013.10.02.)

④ 연구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1999. 5. 19)

제4조(운영위원회의 구성) ① 연구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소장, 간사 및 소장이 임명한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  
(개정 1999. 5. 19)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(개정 1999. 5. 19)

제5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(개정 1999. 5. 19)

1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2.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·개정

3. 연구과제선정 및 평가

4.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6조(연구원) ① 연구소에는 연구원, 전임연구원, 겸임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(신설 1999. 5. 19)

② 연구원은 이 대학교 공과대학에 재직중인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(신설1999.5.19)(개정2013.10.02.)

③ 전임연구원은 시간강사 이상의 자격소지자, 겸임연구원은 산업체에서 추천한 자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(신설 1999. 5. 19)

④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,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.

(신설 1999. 5. 19)

제7조(평가위원) ① 연구소에는 평가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(신설 1999. 5. 19)

② 평가위원은 매년 연구소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보고서를 소장에게 제출한다.

(신설 1999. 5. 19)

제8조(자문위원) 연구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(신설 1999. 5. 19)

제9조(연구실적 발표) 연구소장은 매 학년초에 연구소의 연구계획(예산서 첨부)을 총장에게 서면 보고한 후 그 실적을 발표한다.(개정 1999. 5. 19)

제10조(재정) ① 연구소의 운영예산은 대학지원금, 연구지원비, 연구관리비,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(개정 1999. 5. 19)

② 간접연구비 관리는 별도의 관리지침에 따른다.(신설 2000. 8. 23)

제11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.(신설 1999. 5. 19)

부 칙(1986.09.26.)

이 규정은 1986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2. 8. 10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1999. 5. 19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0. 8. 23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10. 02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